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2023. 3. 24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6일

-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장례식의 종류 중 ‘충청북도장(葬)’을 ‘충청북도청장(葬)’으로 변경함(안 제4조)
- 조문명칭을 변경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 소요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본 개정안은 현행 ‘장례 비용 지원’만을 명시한 조문을 ‘장례 범위 및 장례기간’으로 개정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
- ‘장례비용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- 이 조례는 관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법령에서 부여된 여건 조성,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 <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>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

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조례안 예고('23. 3. 8. ~ '23. 3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## 4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##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가. 충청북도청장(葬)

제5조의 제목 “(장례 비용 지원)” 을 “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·운영 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.
-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장례비용) ① 도지사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 공무원 등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,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 하지 아니한다.

1. 노제 비용
2. 삼우제 비용
3. 사십구일제 비용

4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 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애도기간 운영)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계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,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장례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장례식의 구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충청북도장(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생략)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장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충청북도청장(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장례 비용 지원) <u>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영결식 비용</u></p> <p>2. <u>장례식 비용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 ① <u>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·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.</u></p> <p>② <u>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장례비용) ① <u>도지사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, 부득이</u></p>

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노제 비용

2. 삼우제 비용

3. 사십구일제 비용

4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
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
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애도기간 운영)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

<신 설>



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  
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계양과  
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, 소  
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 
있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4. 18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자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.>

#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현행 소방활동중 사망한 순직자에 대해 영결식 및 장례비용을 지원 중에 있음
- 조례를 개정하며 영결식 및 장례비용외 조문객 식사비용(1인 5천원이하) 지원으로 추가 비용 발생
-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지원 비용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7조(장례비용)

## 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(1년간) : 5천만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자체사업(도비 100%) \* 예비비

